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3074호

시행일자 2018. 6. 11.

수 신 각 시도 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9호(2018. 6. 11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100호, '18.5.31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당실]-[무료보험상당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요 내용]

-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일부변경(별지1. 별지2)

* (별지1) 리피오돌울트라액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외, (별지2) 얼비투스주 위험분담 재계약 /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없음

○ 시행일

별지1 : 2018년 6월 11일

별지2 : 2018년 7월 1일

붙임 :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